

행정 관료에게 주체적 윤리란 무엇인가?:

Max Weber, 행정개혁론자의 윤리론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Michel Foucault 윤리론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문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공직 윤리를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직 윤리의 철학적 기초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지만 현재까지는 베버의 관료제론에 나타난 관료 윤리와 신공공관리론으로 대표되는 행정개혁론자들의 기업가적 관료 윤리가 대립하고 있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먼저 이 두 가지 윤리관을 공직이라는 영역이 독립된 생활질서가 될 수 있는가, 관료의 인격은 단일한 실체로 보아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또 다른 윤리관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안적 윤리관으로 푸코의 후기 저작에서 나타난 자유의 실천, 자기배려, 실존미학으로의 윤리관을 소개할 것이다. 푸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규율화 된 권력관계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아성찰 속에서 자신을 돌보면서 자신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그의 윤리론은 행정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숙고를 요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푸코가 제시하는 윤리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비교 검토 한 후에 푸코의 윤리관이 현재의 관료들의 윤리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주제어: 행정윤리, 막스베버, 미셸푸코

* 이 논문은 2010년 행정학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윤건수 교수와 신충식 교수에 감사를 표합니다.

** University of Georgia(조지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던 행정이론 등이다(mslee@cu.ac.kr).

I.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개인의 자율화(autonomization)와 책임화(responsibilization)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 시도가 진행 중이다. 조직 안에서 개인의 행위를 직접 타깃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정개혁 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은 공직 안팎에서 다양한 공격을 받고 있다. 기업가적 행정, 혁신, 창의성 등의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강조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현실에 안주하는 소극적이며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이들의 행태와 의식을 변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반면 투명성, 공개성이라는 가치의 강조는 기존의 관료들을 윤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존재로 몰고 가면서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이들에게 부당한 울가미를 씌우고 있다고 보인다.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비난을 무기력하게 수용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러한 공세에 맞서서 공직이라는 생활질서에 내재한 가치를 믿으면서 관료에 고유한 윤리관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존재인가? 관료는 조직 내의 권력관계에서 과연 윤리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자유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들의 윤리적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아직은 시론적 형태로나마 답을 구하고자하는 것이 이 논문을 쓰는 직접적 동기이다²⁾.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관료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한 학자들의 철학적, 윤리학적 주장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나 관료의 조직 내의 윤리에 대하여 현재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제하고자한다. 하나는 행정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의 관료에 대한 윤리관으로, 여기서는 관료를 단일의 인격체로 보면서 관직의 수행과 자아의 발견, 발전, 실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특징을 지닌다. 다른 하나는 베버(Max Weber)의 관료제론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관직은 다른 생활질서(life order)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윤리적 생활질서인 것으로 공무의 수행과 개인의 사적 자아성취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각자가 서로 다른 윤리적 판단기준을 지닌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관료에 대한 윤리관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에

2) 논문을 쓰게 된 다른 하나의 동기는 Camilla Stiver(2008)가 최근의 저서에서 보여 주듯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또 다른 전체주의로 진행 할 위험에 있다는 인식에서이다.

직면한 관료들의 실존적 고민이 출발하는 지점이 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푸코(Michel Foucault)의 윤리론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즉 규율화 된 권력관계 안에서도 개인적 자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아성찰 속에서 자신을 돌보면서(care of the self) 자신의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푸코의 윤리론은 행정학적으로도 깊이 있는 숙고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베버의 행정윤리와 행정개혁에서 보는 행정윤리를 개인의 사적 자아와 공적 인격의 분리와 통합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싶은 점은 행정개혁의 논리에서 보는 이상적인 관료는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공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기대되는 혁신지향적이며 창의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료상은 “분리의 예술”(Walzer, 1984)을 수행하는 국가 관료제의 역할을 강조하는 베버의 관점에서는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엄격하게 규율화된 “질서인간”으로 규정된 베버의 관료는 비극적 영웅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부각될 것이다. 3장에서는 푸코의 윤리관을 그의 권력, 통치성, 자유의 개념과 연관 지어 살펴볼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지식/권력”이 작동하는 담론의 구조 안에서 해변에 썩진 글씨처럼 사라져 버리는 초월적 주체를 이야기하는 구조주의자로서의 푸코가 아닌 “자기 보살핌”과 “삶의 미학”을 통한 “주체화(subjectiviz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기의 푸코가 강조된다. 4장에서는 이들 세 종류의 윤리관을 비교해 본 후에, 푸코의 개인 윤리에 대한 이해가 행정부의 관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베버와 개혁론자의 윤리관과의 관련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Ⅱ. 관료윤리에 대한 두 방향에서의 접근

1. 베버가 보는 관료 윤리

베버가 보는 윤리적 관료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합리성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근대적 세계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베버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베버에게 근대적 세계는 서로 상이한 가치와 이상들 간의 생사를 건 투쟁으로 특징지어지는 다신교적(polytheistic)이고, 무질서한 세계이다. 이 세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가 새로 등장하는 생활 질서(Lebensordnungen)의 도전에 직면하여 그 지배적 위상을 상실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과거 종교를 중심으로 질서 있게 배열되었던 생활세계는 경제, 정치, 과학, 예술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 만의 가치지향을 지니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근대적 생활질서로 분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활질서는 자신 만의 내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다양한 세속적 가치와 믿음을 양산한다. 문제는 다양한 생활질서의 가치들은 서로 간에 치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데, 이는 한 생활질서의 정당성은 다른 생활질서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획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버(1917: 17-8)는 “[생활질서들 간의 화해]는 가치들 간의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과 악마 간의 투쟁과 같은 성격의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죽음을 건 투쟁(death-struggle)이다. 이들 간에는 상대화(relativization)나 타협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생활영역 가치의 계속적이고 가열찬 반대 맞서서 어느 특정한 생활영역과 그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신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이와 같은 상호 투쟁하는 가치로 가득한 세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인격을 얻는 수밖에 없음을 베버는 강조한다. 이 때 인격이란 “특정한 궁극적 가치나 생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를 일컫는 개념으로, 이 가치나 의미는 합리적-목표지향적 행위를 이끄는 특정 목적이 되는 것이다”(Weber, 1921: 573). 결국 인격을 지닌 개인은 자유롭게 선택된 궁극적 가치질서에 헌신하면서 사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격을 지닌 개인은 자신의 생활세계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일상의 행위에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이다. Hennis(1988: 92)에 따르면 이러한 중심은 “한 개인이 개인성을 초월하는 사명(Sache)에 대하여 완전하면서 내면적으로 동기부여된 개인적 헌신”을 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사명은 종교적 명령, 조국에 대한 충성, 인간에 그리고 근대에

들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개인적 소명으로서의 직업(vocation)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내용을 취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받치면서 열성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Immanuel Kant가 말하는 인격을 가진 개인이란 실천이성의 지시하는 정언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을 따를 것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다소 규범적, 형식적 존재이다. 반면, 베버가 말하는 인격을 지닌 개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좀 더 실질적인 의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즉 인격을 형성시키는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영역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치, 행정, 예술, 성(erotic)의 영역을 포괄하며 선택에 대한 의무나 책임도 칸트처럼 인류(humanity)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의 선택한 가치에 지는 것이다(Weber, 1915).

결국 근대 이후 가치라는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를 사는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질서 영역을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부여하는 가치를 온 몸으로 실현시키면서 사는 인격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함을 베버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관료가 되기를 결정한다는 것도 하나의 독립된 생활질서이며 윤리질서인 관료제와 그것의 가치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관료도 인격을 지닌 개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관료 개인이 인격적 존재로서 관료제 안에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극도의 자기절제와 자기부정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에 근대 관료가 가지는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영웅적 실존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먼저 비극적 측면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베버에게 정부 관료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독자적 생활질서를 형성하는 영역이다. 이는 관료제에 들어 오기 위해서는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특히 관직을 하나의 소명(vocation/ Beruf)으로 보고 그에 따른 고유한 임무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해진다(Weber, 1921: 958-9). 그러나 하나의 인격으로 관료를 보고 있더라도 관료는 인격의 완전한 실현이 불가능한 존재라는데 관료의 실존적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역사적 발전에 따른 가치 합리성을 대신한 수단 합리성의 사회 모든 영역으로의 전파는 인간들을 무의미성의 나락으로 빠지게 했음을 베버는 강조한다. 그리

고 이러한 합리화의 과정은 인간의 내면적, 외면적 자유를 구속하는 규율화 과정을 수반하면서 진행되었음은 베버를 위시하여 그 후의 학자들 예를 들어 엘리아스(1982)나 푸코(1977)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가로막는 합리화의 진행의 중심에 관료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베버에게 관료제는 역사진행의 필연적 산물인 동시에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위협적인 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관료는 자신들의 생활질서 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인격을 실현하는 존재인 동시에 극도로 엄격한 규칙과 법규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규제를 받으면서 철저히 비정서적, 비인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비인격적 존재인 것이다(Weber, 1921: 982-3).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합리성의 규율을 따르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관료제는 대체시키기가 불가능한 지배형태로서 다른 형태로 조직화되는 행정을 배제한다. “행정의 관료제화가 완성되는 곳에서는 하나의 실질적으로 깨지지 않는 지배관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Weber, 1921: 987). 기계와 더불어 관료제는 “미래의 속박의 외피를 만들게 되며”, 사람들은 그것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을 강제 받게 된다. 관료제에 대한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베버(1918: 159)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관료제화로 가는 지배적 경향에 맞서서, 개인적 자유를 향한 운동의 어떠한 흔적이라도 보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관료제 안의 관료가 인격의 소유를 방해받는 중요한 이유는 단지 자유의 제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자아 혹은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변화에 있다고 베버는 보고 있다(이문수, 2008). 이는 베버가 근대 관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질서를 지향하는 인간” 즉 *Ordnungsmensch*라고 부를 수 있는 관료적 자아의 형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Ordnungsmensch*는 철저히 공식적 규율에 길들여진 존재로서 베버(1920)가 현대인의 이상으로 삼은 강한 자기중심을 지니면서 자신만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인격과 정반대의 위치에 놓인 존재이며, 또한 청교도적인 소명인간인 *Berufsmensch*와도 대비되는 존재이다. 인격의 형성과 관련지어 가장 중요한 *Ordnungsmensch*의 특징은 이것이 궁극적 가치, 개인적 경험과 기억, 문화적 배경 등에 기초한 관료 개개인들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화되고 균일적인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점일 것이다. 관료제는 분명 근대에 들어 나타난 복잡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행정의

도구이지만 역으로 모든 관료들을 자신의 운영 논리에 종속시키면서 관료를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신체가 통제 대상이 되고, 모든 정서적 요소가 업무 수행에서 배제되며, 인간의 특수성이 사라지는 관료제는 바로 기계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료적 자아의 보편화는 관료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더욱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데, 베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다. “세계가 자신의 조그만 자리에 연연하고 이 보다 약간 큰 것을 갈망하는 이(cog)로 채워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질서만을 요구하고, 잠시라도 질서가 흔들리면 긴장하면서 겁을 먹고, 질서에 적응하는데 실패라도 하면 완전히 무력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분해하는(parcelling out of the soul) 것으로부터, 즉 관료적 이상의 배타적 지배로부터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인류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는가이다”(Goldman, 1992: 172에서 인용).

위와 같은 극도로 규율화된 관료에게 과연 윤리란 어떤 의미일까? 톱니의 이처럼 생활하고 또 하여야만 하는 관료는 윤리적, 도덕적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베버의 반응은 단호한 것으로 관료의 세계도 독자적인 윤리질서를 갖고 있는 세계이다. 단지 그것이 윤리적으로 공허해 보이는 이유는 관료는 철저한 자기부정, 자기초월의 금욕윤리를 지녀야 함을 베버는 인식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1차대전의 패전의 원인을 “관료들의 지배(rule by officials)”가 낳은 정치적 책임의 부재로 돌리는 논문에서 베버(1918)가 지적하는 관료의 윤리적 행동기준은 우리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는 명령을 받은 관료는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의 상관이 그 명령을 계속 고집한다면 관료가 그 명령을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확신과 일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그 관료의 의무이자 명예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료는 그의 관직에 대한 의무가 그의 개인적 의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관직의 정신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윤리)이다”(Weber, 1918: 160).

이와 같이 자기부정을 통한 소명의 실현은 베버에게는 낯선 것이 결코 아니다.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청교도 윤리의 핵심은 현세의 무의미성을 기초로 한 철저

한 자기부정에 있는 것이다. Cromwell의 청교도군이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용맹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의 어떤 공격에도 대오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침착하게 전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있다고는 말하고 있다(Gerth and Mills, 1946: 257).

베버가 보는 이상적 관료란 관료제라는 독자적 생활질서를 선택하였고 그 질서가 부과하는 가치나 윤리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즉 이들은 사회에서 일반화된 윤리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자아실현, 혁신과 창의성, 고객만족, 동정심 등을 무비판적으로 관료제 조직의 윤리기준으로 들여올 수 없는 것이다. 관료의 인격은 자기부정의 금욕적 윤리에 기초하여 완성되는 것이고, 관료는 비록 명령이 자신의 신념과는 어긋나는 것이라도 그것을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삼고 행동하는데서 명예를 얻게 되는 자이다. 즉 그들은 비록 철저히 규율화된 생활을 하면서 자아(self) 역시 이에 익숙한 자아로 변화되어야 하는 비극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행정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분리의 예술”을 수행하는 영웅적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철저히 자신의 생활질서 안에서 규율화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관료가 과연 윤리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자유가 배제되거나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에서의 삶이 과연 윤리적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된다. 아래에서 보는 행정개혁론자들의 주장이 자유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베버는 자유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지 않은가? 자유와 권력은 조직 안에서 개혁론자들이나 베버가 생각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전제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윤리적 존재란 권력과 자유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도 실현가능하지 않은가? 푸코의 개인 윤리에 대한 생각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부분적이거나 답을 얻고자 함이다.

2. 행정개혁에서 보는 관료 윤리

정부의 정치적 색깔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행정개혁은 그 속도와 과감성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Caiden, 2006; Lind, 2005).

특히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인 경쟁과 선택 그리고 경영학 분야에서 개발된 관리기법의 행정에의 적극적 도입은 관료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정부 관료제가 직면한 문제의 근원을 관료 개인의 형식주의적이고 법규(절차)만능주의적인 소극성과 수동성에서 찾고 있는 이러한 견해는 이에 대한 처방책으로 단일한 인격으로서의 관료를 상정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의 가공성(artificiality)을 극복할 것을 주장한다. 즉 엄격한 규정과 규율의 지배는 관료 개인의 자아를 왜곡 시키는 것으로 관직 수행을 통해 관료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감성과 이성, 공적 책임감과 사적인 욕망, 냉정과 열정 간의 조화를 통해서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주장은 개인의 자아는 여러 생활영역에서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단일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또 관직(office)과 개인(person)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행정이 적응하려면 이와 같은 구분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개혁론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du Gay, 2000, 2003, 2008; Hoggett, 2005).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 혹은 “반응성(reaction)”을 강조하는 주장으로,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관료행태는 “정치적 중립”, “형식적 일관성”, “비정의성”등의 원칙에 집착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관료도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직무-특정적 의무를 초월하는 사회에 분포된 보다 포괄적 도덕적 고려에 기초한 독립적인 윤리관을 지녀야한다는 것이다. 즉 때때로 관료도 자신의 직무에서 한 발짝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행정의 대상인 시민은 더 이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욕구와 욕망의 담지자로서의 고객 혹은 소비자로서 간주된다. 시민을 소비자로서 간주하자는 주장은 관료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 때 관료에게는 객관적 임무가 부과하는 조직내적인 윤리가 아닌 시민들과 동화할 수 있는 도덕기준을 지니고 가변적인 시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정적인(compassionate)” 윤리가 요구된다(Bauman 1989; Longstaff,

1994). 관료에게 요구되는 이와 같은 동정적 도덕관념은 도덕적 판단에서의 행정의 중립성 보다는 사회에 일반화된 도덕규칙의 행정에의 침투를 당연시하면서 행정권력의 책임의 근거를 상당 부분 공적 의무의 철저한 수행이 아닌 관료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관념에 기초시키는 것이다.

행정개혁론자들의 두 번째 주장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을 관료가 법률에 규정된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해야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이 인정하는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이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나타나는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정책수행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에서 근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관직의 의미가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공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이나 정책의 실현의 수단이 되어야함을 뜻한다. 이러한 새로운 공직관에 따르면 최소한 고급관료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특정 정책에 대하여 신념을 가지고 헌신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관료도 “책임의 윤리(ethics of responsibility)”와 더불어 “신념의 윤리(ethics of conviction)”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베버의 공직관과 새로운 윤리관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장은 학문적인 것이라기보다 일반인들의 반 관료제적 정서에 주로 호소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나 관료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Peters, 1989; Osborne and Gaebler, 1992; Hamel, 2000). 즉 지금까지 관료들은 절차적 공정성이나 법규의 형식적 적용 등의 관료제적 타성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현재의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관료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윤리나 철학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기업가적 정신(entrepreneurship)인 것이다. 이는 푸코(2007)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가장 중심적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인간의 “기업가화(entrepreneurization)”의 행정적 적용인 것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투자의 관점에서 설계해야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통치되어진다는 푸코의 주장은 행정 관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 정부가 효율적, 생산적 행정을 위해서는 관료의 정서(ethos)가 경쟁지향적, 기업가적 열정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게도 보인다. 그러나 “기업가적 정부” 등의 그럴듯한 수사(rhetoric)로 무장된 이러한 주장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관직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된 관료는 관직의 수행을 개인의 열정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보게 되면서 공적 이해와 사적 이해 간에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열정적 관료는 Dobel(1999, 131)의 지적대로 자신의 직무를 자신의 의지와 이념적 정향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기반을 두고 진행 중인 행정개혁의 시도들이 관료 개인의 윤리적 정서와 행태에 요구하는 변화의 정도와 방향은 관직과 개인의 분리에 기초하여 성립한 근대 관료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는 또한 베버가 그리고 있는 근대 관료의 존립기반을 근거에서 뒤흔드는 일이다. 베버에게 관료의 인격은 철저하게 규정된 임무의 수행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하나의 윤리적 생활질서인 관료제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관료는 소명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버리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 즉 관료는 공무를 수행하는 관료제를 자신의 생활세계로 선택한 이상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규율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규율되어야만 자신의 직을 소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극적인 처지에 놓였지만 영웅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다음은 관료윤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다는 의미에서 푸코의 윤리론을 살펴 볼 것이다. 푸코의 윤리론을 보는 이유는 베버나 개혁론자들의 관료 윤리에 대한 해석을 대체하는 또 다른 윤리론을 찾아야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의 관료 윤리에 대한 사유의 폭을 확대하고자하기 때문이다.

Ⅲ. 푸코의 윤리론

논의가 우회하지 않기 위해 푸코 윤리론이 그의 전체 철학에서 지니는 위치를 간단히 살펴 본 후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겠다. 흔히 푸코는 서양철학에서 상정하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주체(subject)란 사실 지식/권력 게임

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체의 소멸을 주장한 학자로서나, 대표적 저서인 《Discipline and Punish》에서 감옥, 병원, 학교 등에서 시선(gaze)의 내면화를 통한 “유순한 몸(docile body)”이 양산되면서 전체 사회가 “감금사회(carceral society)”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힌 학자로서만 기억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푸코(1982, 213)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그의 최대의 학문적 관심사는 주체(subject)의 형성과 관련된 주체화(subjectivization)와 주체가 권력에 의해 규율되는 예속화(subjection)와의 복잡한 상호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방법론은 초기의 담론구조와 지식의 형성을 다루는 고고학(archaeology)과 중기의 지식과 권력의 밀착관계를 다루는 계보학(genealogy), 그리고 후기에 오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자아의 형성과 변혁을 다루는 윤리학(ethics)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즉 지식의 고고학은 인간과학(human science)의 도움으로 이론적 수준에서 개인의 자아가 개인 내부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권력의 계보학은 권력관계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개인이 실재적으로 어떻게 구성 또는 재구성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윤리학은 위와 같은 내부적, 외부적 규정 속에서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예속된 자아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도인 것이다.

푸코가 윤리를 다룬 저서에서 관료의 윤리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명백히 한 부분은 없다. 결국 이는 연구자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작업인 것이다. 본 연구는 후기 푸코의 권력 개념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의도적 자유의 실현”으로서 그의 윤리관을 살펴 본 후, 이것이 과연 위에서 본 두 가지 유형의 관료 윤리론과 어떤 관련을 지닐 수 있는가를 탐구할 것이다.

1. 권력, 자유, 그리고 통치성

권력의 문제는 푸코의 전 생애 걸쳐 그의 관심을 집중시킨 주제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의 권력 개념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Discipline and Punish》와 《History of Sexuality, I》에서 보이는 권력은 과학이라고 불리는 지식의 형성과 결합하여 인간을 개별적으로 규율화 시키는 “해부정치(anatomo-politics of human body)”와 인간을 종, 혹은 인구, 또는 다른 성적인 장치들과 관련하여 통제하려하

는 "생명정치(bio-politics of the population)"³를 결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의 권력은 전통적으로 이해되던 방식 즉 군주의 복수에서 나오는 공개적 처벌에서 벗어나서 고립으로서의 감옥체제로 이행하면서 개인을 일정한 규범 틀에 맞게 개조시키는 생산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다(Foucault, 1979: 147).

그러나 1978년의 *College de France*에서의 강의³ 이후로 권력은 지배와 자유 사이에 위치하면서 일정한 자유를 지닌 자들 간의 "전략적 게임"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푸코(1982a)에게 자유는 권력의 존재 조건이 되는데, 이는 자유가 없는 권력관계는 바로 지배(domination)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 단지 위무나 금지로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며, 그들을 통해서 행사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인데 이는 권력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권력에 저항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Foucault, 1977: 26-27).

권력은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나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 모세혈관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닌 개념이다. 즉 우리는 권력관계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으며 단지 그 권력관계가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지배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지속적인 투쟁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나 마르크스가 주장하듯이 우리가 성적 억압이나 지배적 생산관계에서 해방되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은 푸코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주장이다. 어떠한 해방도 우리를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만들지 못하며, 단지 새로운 권력관계를 결과할 뿐이다(Chowers, 2004). 즉 푸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유토피아나 도달해야 할 어떤 지점을 상정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 권력관계가 우리의 주체적 삶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지 않게끔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 Foucault의 강의 가운데 1975년에서 1979년까지의 강의가 최근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후기 푸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첫 번째(1975-76) "사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부제로 출판된 것으로 권력, 지배, 전쟁, 주권, 민족 등의 주제를 계보학(genealogy)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책(1977-78)은 통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안전, 영토, 인구"라는 부제를 갖고 있으면서 통치와 통치성에 관한 폭넓은 분석으로 시도하고 있다. 세 번째 책(1978-79)은 "생명정치(bio-politics)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지닌 것으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통치 합리성의 분석으로 통해 현대 정치의 핵심에 접근하려 시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푸코가 생각하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푸코는 인간의 자아(self)는 결코 지식/권력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우리의 자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든 원치 않던,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체계(epistem)이나 담론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화(socialization) 이론과도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Mar Bevir(1999)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자아의 자율성(autonomy)에 대한 부정이 자아의 행동성(agency)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푸코(1994c)는 자아의 이러 저러한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일정한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음으로 해서, 권력관계의 장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활용하면서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인의 행동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결국 푸코에 따르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권력관계의 장안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력관계는 베버가 상징하듯이 그렇게 깨어질 수 없는 “철의 우리(iron cage)”는 아니 것으로, 그 안에서의 행위자들은 모두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지니면서 전략적 행동을 하고 있다. 권력이 있는 곳 어디에도 저항의 자유의 여지는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생활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기존 권력 관계가 지니고 있는 억압적, 폭력적 측면을 고발하고 권력관계가 지배관계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유의 개념은 푸코의 윤리관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푸코(1994c: 284)에게 자유는 “윤리의 존재론적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통치성도 바로 이러한 권력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 1970년대 후반 이후 푸코가 사용한 개념으로 여기서 근대적 권력의 작동원리가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된다.

푸코(1979: 136)의 윤리론을 이해하는데 통치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권력은 “죽이거나 그냥 살게 놔두는” 공제적(deductive) 권력-이는 주권이라 부를 수도 있다-에서 “살리거나 그냥 죽게 놔두는” 생산적(productive) 권력으로 전환된 사실에 있다. 이 전환이 중요한 점은 통치가 과거 군주가 자신의 영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배한다는 관념에서 일정한 영토 내에서 사람들과 사물들의 관계를 모두의 번영이라는 목표 아래 관리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가 새로워지면서 “행위에 대한 행위(conduct of conduct)”로서 통치의 의미가 부각되기 때

문이다. 즉 통치는 Nikolas Rose(1999)의 지적대로 원격지배(rule at a distance)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어느 주체가 타자에게 이런 저런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가능성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통치가 일정한 합리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과학적 진리라는 이름으로 행사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통치성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각자와 모두(each and all)”에 대한 통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이문수, 2009). 즉 국민 전체는 인구나 종족이라는 생물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자체의 고유한 발전 논리에 따라 진리라는 이름으로 통치된다면, 국민 개개인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정신과학, 훈육의 책임을 부여받은 교육학과 교정학 등의 학문적 기반 위에서 기독교에서 발전된 고해성사(confession)라는 권력 장치를 통해 대상화(objectification)되는 것이다. 특히 푸코는 19세기 이래로 성에 대한 억압이 있어 왔으며 이런 억압이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주체화시켰다는 가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성적 담론이 억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런 담론의 증가 속에서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은 푸코가 주목하는 자아의 주체화는 결코 권력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개인의 윤리적 자아 형성을 인식론적으로만 파악하는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즉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파악했을 때 우리는 전 우주를 이해했을 지라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적 사고에 따르면 주체는 진리에 다다를 수 있지만 진리가 주체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종교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최영주,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이성중심적 사유를 비판하는 푸코는 현세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그 단초는 바로 그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철학과 윤리 간의 일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진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성에 기초한 인식(앎)이 아니라 실천에 있는 것이다.

2. 윤리적 실천이란?

푸코는 보편적 진리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험을 일정한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저항한 학자이다. 그러나 주체란 단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성물이며, 권력은 사방에 편재해있다는 그의 주장은 이와 같은 저항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과연 저항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푸코의 입장은 단호하다. 저항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외부로부터 작동하면서 개인을 틀 지우는 억압과 착취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개인들 내부로부터 추동되어 개인을 만들어가는 자기구성적 주체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푸코의 관심이 후기로 가면서 윤리로 옮겨지는 것은 점차 축소되어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즉 지금의 지식/권력 체계는 우리 삶의 가능한 형태를 틀 지우면서 자유의 지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푸코(1994d)에 따르면 칸트가 “무엇이 계몽인가?”에서 주장한 비판은 아직도 유효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를 만든 우연성(contingency)으로부터 더 이상 이 대로 존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윤리적 비판작업의 목표는 현재의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에 의하여 강요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창조적으로 자아를 바꾸어가는 것이다.

푸코는 자아는 어떤 구체적 본질이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채워나가고 만들어야 하는 하나의 형태(form)라고 말한다. 철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규정하고 정신병원, 학교, 형무소, 정부관료제 등에서 훈육의 모델로 삼는 인간의 모습은 역사적 가공물로서 저항의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지식/권력 복합체의 부산물인 자아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아형성의 과정은 그러므로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이다(Foucault, 1982: 216). 푸코는 또한 스스로 형성한 자아일지라도 지식/권력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앞선 권력과 자유와의 관계에서 본 것처럼, 권력으로 부터의 해방은 새로운 권력관계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관점과 유사하게 푸코는 주체적으로 형성된 자아도 현재의 지식/권력관계에서 오는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즉 현대를 사는 개인은 창조적 자기형성 못지않게 끊임없이 자기극복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자아의 정체성과

윤리적 행동을 둘러싸고 이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힘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이야말로 윤리적 행동의 시작이라는 말이 된다. 윤리적 삶의 목표가 자유의 실천을 통하여 자아라는 형식을 주체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면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비윤리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O'Leary, 2002: ch. 9).

여기서 우리는 푸코의 윤리관이 윤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어느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History of Sexuality II, III》에서 나타난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를 통해서 보는 자유의 실천으로서, 자기배려와 존재미학의 원리로서의 윤리에 대한 푸코의 구체적인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학자들이 관료의 윤리를 말할 때 그들의 관점은 크게 결과주의적 윤리관과 의무론적 윤리관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공리주의를 대표로 하는 것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의무론적 윤리관은 칸트의 도덕철학을 기초로, 행위를 할 때는 보편적 도덕준칙에 따라야 하며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의도나 동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가 결과를 기준으로 수단 선택에 있어서 다소간의 융통성을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후자는 수단 하나 하나가 엄정한 준칙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윤리를 보는 이 두 가지 관점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개인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으로, 이 기준은 선언, 강령, 규정, 법규 등으로 코드(code)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⁴⁾. 푸코의 윤리관이 행정학에서의 전통적인 윤리관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이란 바로 지식/권력의 작용에 따른 피동적 주체화의 원인이며 효과인 것으로 보면서, 모든 인간(관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형적이고 객관적인 윤리 기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존재와 이에 대한 코드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암묵적으로 관료의 행위에 대한 코드화가 진전될수록 관료윤리가 높아진다는 가정을 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권장규정이든 금지규정이든 간에 관료 행위에 대한 코드화의 진전이 관료의 윤리의식이나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가정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푸코(1985: 10)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예에 비추어 “의무나 금지가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도 덕적 열망이 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History of Sexuality II, III》에서 푸코가 보여주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성윤리는 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고대세계에서도 성적 활동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었지만, 푸코(1994a, 1994b)에 따르면, 이 고려는 어떤 한계를 정하여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금지의 체계” 즉 의무와 금단의 윤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이 자신만의 도덕률을 스스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자신의 존재를 예술작품처럼 만들어 가는가 하는 “자아의 기술”의 관점에서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나 로마에서 강조되었던 극기(enkratēia)나 절제(sōphrosynē)와 같은 윤리적 덕목들은 자아의 실천의 면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것들이 하나의 금지체계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학파에 따라 달리 제시되는 윤리적 덕목들도 이를 개인에게 강요(impose)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권장되는(propose) 것으로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이다(Foucault, 1985: 21). 즉 성적 활동에 관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의 윤리적 고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법률, 관습, 종교적 금지 등으로 코드화된 몇 가지의 금지체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개인들의 권리, 권력, 자유를 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들의 잠재성, 자율성,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을 고양시키는가하는 목적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푸코가 도덕(morality)과 윤리(ethics)를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비슷한 관점에서 헤겔도 도덕을 말하는 *Moralität*와 윤리를 말하는 *Sittlichkeit*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보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으로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특정한 장소와 시대에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푸코(1994b: 269-280)에 따르면 기독교의 생성과 발전 이후로 서구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발전한 삶을 미적인 관점에서 배려하고 돌보는 의미로의 윤리가 점차 의무나 금지를 강조하는 도덕으로 대체되어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편적 도덕이 무조건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인들을 내면적으로 감시하고 규율하는 다양한 기제(예를 들어 고해성사)들이 발전하면서 자유의 “의식적 형식”으로 정의되는 윤리 개념이 무시되었고 개인들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다른 모양으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배제되는 것이다.

물론 푸코가 보편적 도덕률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

드화 되어있으면서 금지와 의무를 강조하는 도덕 이외에도 우리의 구체적 삶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의 세계가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사실인 것이다. 푸코(1994b: 267)는 “윤리의 계보학”이라는 논문에서, 윤리란 “개인이 자신과 맺어야만 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것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의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는 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가는 관점에서 보편적 준칙을 따라야하는 도덕과는 다른 윤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학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푸코의 윤리론은 통상적으로 행정학에서 말 해어지던 윤리와는 확연히 다른 윤리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기준이 결과의 적절성이든, 아니면 수단의 적법성이든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을 따르는 삶을 공직자의 윤리적 삶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푸코의 윤리관과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럼 푸코에게 윤리적 인간은 단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채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가꾸면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푸코에게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성찰, 자기연마, 자기극복이 필요한 과정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知行合一)과 로마시대 스토아철학의 엄격한 금욕적 삶을 윤리적 삶의 일부로 보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푸코(1985: 25-32)는 《History of Sexuality II》의 서문에서 윤리적 행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특정 시대를 사는 개인들의 삶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윤리적 본질(ethical substa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특정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에게는 욕망(desire)이, 칸트에게는 의도(intention)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푸코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적 본질은 쾌락이나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즐기는 행동이 된다. 즉 그리스인들은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행위, 예를 들어 철학자와 소년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고 절제되는가에 윤리의 본질을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복종양식(mode of subjec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도덕

적 의무나 지배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가를 말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의 도덕적 의무를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이 핵심이 되는 것으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람들은 신법(divine law)이나 종교적 금지규정, 자연법, 혹은 보편적이고 합리적 법률 등에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고대 그리스나 로마인들처럼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면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려는 열망에 스스로를 종속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윤리적 작업(ethical work)” 또는 “자아형성 행동(self-forming activity)”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들이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성적 금욕(sexual austerity)이라는 윤리적 목표가 있다면 이는 기독교윤리에서처럼 쾌락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과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욕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을 생활화하면서도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목적(telos)이 되는데, 이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했을 때 얻원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추구되는 인간상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윤리적 행동도 순수(purity), 불멸(immortality), 자유, 또는 자기정복(self-mastery)과 같은 특정한 목표의 추구와의 관계에서 윤리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윤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와 같은 푸코의 주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실천하는 윤리관은 여러 가지 가능한 윤리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 확장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윤리관과 대치되는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를 더욱 고양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윤리관을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IV. 푸코 윤리론의 행정에의 적용

“자기배려”, “존재의 미학”, “자아의 기술”을 강조하는 푸코의 윤리적 삶에 대한 성찰이 행정개혁론자와 베버의 윤리론과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우리는 먼저 위에서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푸코의 윤리적 판단의 구성요인을 가지

고 이 세 가지 윤리관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관료 윤리관의 비교>

	베버의 관료	개혁론자의 관료	푸코의 관료
윤리적 본질	관직이라는 소명	조직목표의 달성	자유의 실천
복종양식	형식적 규정과 명령에의 복종	자율성과 책임	심미적 삶의 추구하고 자기배려
윤리적 작업	금욕적 자기부정	실용적 자기개발	쾌락의 활용과 절제
목표	삶의 의미획득	인격의 통합	자율적 주체형성

물론 위의 분류의 내용은 연구자의 각 윤리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관료의 윤리와 관련하여 이 분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복종양식”과 “윤리적 작업”이 될 것이다. 과연 관료에게 규정과 명령은 그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과정에서 관료 개인의 심미적 주체형성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인가? 관료는 베버가 보는 청교도처럼 현세에서의 금욕적 자기부정을 통해 윤리적 구원을 추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가시켜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관료가 가지는 다양한 욕망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통제되고 금지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관료의 주체적 입장에서 활용되고 절제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현실에서의 관료들의 윤리적 삶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세 종류의 윤리관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관료가 자신을 윤리적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듯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푸코의 저작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현재가 현재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탐구해야 한다는 푸코의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연구하는 학자의 관점과 지향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푸코의 윤리론을 구성하는 철학적 주장들이 현재의 관료의 윤리에 대한 논의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지적하겠다.

1. 자유의 실천 통한 윤리적 관료의 형성

먼저 푸코가 규정하는 자유는 베버의 관료론이 지니는 난점, 즉 관료는 권력이 지배하는 규율화된 상태에서 자기부정적 삶을 살아야 비로소 소명을 완수한다는 선득 수증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한 부분적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푸코의 자유는 윤리의 존재론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사회 곳곳에 편재된 권력 관계 안에서 기능하는 것임은 앞서 밝혔다. 이러한 푸코의 자유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Rajchman(1991)이 지적하듯이, 권력관계의 장 안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성찰적으로 자신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 자유가 가능하게 한다는데 있다. 푸코에게 자유는 항상 제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제약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푸코의 자유는 분명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원자론적 자유 관 즉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푸코의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하듯이 권력관계로부터의 탈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권력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미를 획득한다. “문제는 완벽하게 투명한 의사소통(하버마스가 제안하듯이)의 유토피아에서 권력을 해체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에게 법의 지배, 관리의 기술, 윤리, ethos, 기술 등을 부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권력의 게임은 최소한의 지배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Foucault, 1994c: 298).

이와 같은 푸코의 자유에 대한 사유가 중요한 것은 관료제의 규율이 아무리 엄격해도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아망각적 복종이나 지배를 결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관료제 안의 관료가 자신을 규율화 시키는 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푸코가 보는 권력은 사회 관계에 망사처럼 퍼져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많은 틈과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고 행위자는 그 틈과 간격을 이용하여 권력이 지배(domination)의 관계로 전락하지 않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베버의 관료가 아무리 비극적 영웅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규율화된 존재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과연 관료 개인의 입장에서 윤리적인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권력 앞에서 유순해지는 존재로 남지 않고 주체성의 구성을 통해 자아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푸코의 주장은 이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력 상황에서 개인이 활동적인 도덕

적 존재로 자기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푸코 윤리론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2. 일반화된 규범으로서의 도덕(morality)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윤리(ethics)

푸코에 의한 성문화된 도덕규정이 아닌 행위의 스타일로서의 윤리의 강조는 도덕과 윤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푸코 역시 명시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데, 그가 “도덕규칙(moral code)”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지(interdiction)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사후에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Foucault, 1985: 19)⁵⁾. 그러나 푸코(1994b)에 따르면 금지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도덕률은 개인의 자유에 의식적 형태를 부여하는 행동으로서 윤리를 중요시한 고대의 그리스에서는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기독교의 생성과 발전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푸코는 과연 보편적 도덕률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도 극히 회의적이다. Flyvberg(1998: 222)의 푸코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보편적 규칙을 찾으려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보편적 규칙이 존재한다고 말해지거나 사람들이 그것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곳에서는 그 보편규칙은 받듯이 의문시되어야 한다.” 결국 푸코에게 인간은 어떤 본질(substance)을 지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형식(form)인 것으로, 그 형식은 자아에 대한 배려나 자아의 기술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윤리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이렇게 도덕과 윤리를 구분하여 윤리적 삶을 강조하는 푸코의 주장은 현재 행정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혁신적이고, 모험을 즐기며, 기업가적으로 열정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관료의 윤리관과 어느 정도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행정개혁 시도들은 관료들의 윤리적 사고나 행위의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위에서 밝혔다. 그 중심 내용은 관직과 개인을 분리시키는 관료제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고객으로 인식되는 시민과 동감(compassion)하거

5)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행위 자체에 있는 지 아니면 행위자의 의지나 의사에 있는 지에서 푸코는 칸트의 입장 즉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와 의도(intention)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정책의 가치에 관료가 자신을 몰입시키거나, 기업가적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아성취와 관직의 임무를 동일시하는 것임도 밝혔다. 이와 같은 개혁론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관료의 인격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서로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단일한 실체인 것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자아배려와 존재미학의 관점에서 자신을 특징 있는 인격으로 구성해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관료는 관료제 안의 제한된 자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개성 있는 자아로 구성하면서 자아성취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개혁론자들의 관료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푸코의 그것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관료 개인이 받아들여야 할 삶의 방식은 관료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행위에 대한 행위를 통해서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윤리가 아닌 통치성을 표현한 것이다. 푸코(2008)는 1978-79년 *College de France*에서의 강의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징을 명확히 한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인간들 간의 관계를 교환(exchange)관계로 가정하는데 반해,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근간은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competition)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이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지고 자신의 일생을, 기업가가 자신의 회사를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나,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나, 결혼을 하는 것이나, 자식을 낳는 것 모두가 투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에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수단합리적 행동으로 보는 것도, 인간을 *homo-economicus*로 규정하는 것도 진리형성을 통하여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치하게끔 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다름 아니다.

V. 결 론

푸코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전개한 윤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준다. 특히 권력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사유, 그리고 자기배려 혹은 존재미학으로서의 윤리는 권력과 자유, 강제와 자발성의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생활 곳곳에서 윤리적 실천이 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권력이 지배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푸코의 윤리론은 베버와 최근 행정개혁론자들 간의 상반된 관료 윤리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이를 초월하여 한 단계 고양된 관료 윤리관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열고 있다고 보인다.

현재의 행정부 관료들의 일상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푸코의 윤리론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금지규정 위주로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려는 방식의 문제점이다. 즉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 놓고 그것만 준수하면 관료의 업무수행은 윤리적이라는 생각은 푸코의 생각과는 거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료의 공적인 삶을 끼워 맞춘다는 식의 사고는 자신의 삶을 심미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는 푸코의 윤리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공직자 윤리의식의 강화나 윤리적 행동의 촉진을 위해 푸코의 윤리론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는 베버가 정의하는 관료의 임무나 왈쩌가 주장하는 분리의 예술의 측면에서 보아도 관료는 일반인과는 다른 윤리적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관료들의 주체적 자아형성이나 자기배려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동기마저도 무시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바우만(1993)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윤리는 그 전의 모더니즘 시대에 발전한 윤리와는 전혀 다른 윤리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지금은 가치와 규범이 극도로 다원화된 사회이므로 개인 윤리에서도 관용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 연구에서도 관료들이 처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려면 지시적 규범이 아니라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을 둔 상호이해가 강조되고 있다(Harmon, 1995; Fox & Miller, 2007; Stivers, 2008). 즉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몇 가지 가치 기준에 따라 움직이던 다소간의 안정된 시대에서 바우만(2007)이 말하는 “Liquid Times”로 전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역사적이며 거시 구조적 변화에 정부 관료제

만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오만일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시론적 단계의 연구로서 보완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푸코의 초·중기저작의 특징인 주체의 소멸과 후기저작에서의 주체의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정윤리의 관점에서 제기 되는 의문은, 푸코 자신이 자기의 윤리론은 결코 어떤 보편적 도덕규칙이 될 수 없음을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의 윤리론은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투쟁, 비판 지상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다. 즉 어떠한 중착지점도 생각하지 않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틀 안에서 그 권력에 대한 끝없는 비판과 이를 통한 자신의 자유의 실천이 윤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생각은 조직내 무정부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베버가 현대의 가치다원화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시켜주는 초석과 같은 것으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관료제를 보고 있는데, 과연 푸코의 윤리가 인정되는 정부관료제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드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의 시론으로서의 의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참고문헌

- 이문수. 2008. “Max Weber의 관료론: 기계의 부속품인가, 소명을 실현하는 존재인가?” 《정부학연구》 14(3): 35-66.
- _____. 2009. “통치, 통치성, 거버넌스 그리고 개인의 자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71-90.
- 박승규. 2001. “푸코의 빠르지가 담론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9(1): 259-284.
- 임의영. 2005.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전망의 행정철학적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9(2): 23-39.
- 최영주. 2004. “푸코의 후기저작에 나타난 윤리적 주체의 문제,” 《불어불문학연구》 50: 465-487.
- Bauman, Zygmunt. 1989. *Modernity and the Holocaust*.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1993. *Postmodern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_____. 2007.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Malden, MA: Polity Press.
- Bevir, Mark. 1999. "Foucault and Critique: Deploying Agency against Autonomy". *Political Theory*. 27(1): 65-84.
- Caiden, Gerald. 2006. "The Administrative State in a Globalizing World: Trends and Challenges", In N.S.Lind and E. Otenyo eds. *Compara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 Essential Readings*. New York: Elsevier.
- Chowers, Eyal. 2004. *The Modern Self and the Labyrinth: Politics and the Entrapment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obel, Patrick. 1999. *Public Integr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u Gay, Paul. 2000. *In Praise of Bureaucracy*. London: SAGE
- _____. 2003. "The Tyranny of the Epochal Change, Epochalism and Organizational Reform". *Organization*. 10(4): 663-684.
- _____. 2008. "Without Affection or Enthusiasm" Problem of involvement and Attachment in Responsive Public Management." *Organization*. 15(3): 335-353.
- Elias, Norbert. 1982. *The Civilizing Process, Vol. 2. State Formation and Civilization*. Oxford: Basil Blackwell.
- Flyvberg, Bent. 1998. "Habermas and Foucault: Thinkers for Civil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2): 210-33.
- Foucault, Michel.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Harmondsworth: Penguin.
- _____. 1979.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London: Allen Lane.
- _____. 1982. "The Subject and Power", In H. L. Dreyfus & R. Rabinow,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Brighton: Harvest Press.
- _____. 1985.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2. The Use of Pleasure*.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86.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3. The care of the Self*.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94a. "Technologies of the Self", In P. Rabinow ed.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New York: The New Press.
- _____. 1994b. "On the Genealogy of Ethics: An Overview of Work in Progress. In *Ethics*.
- _____. 1994c. "The Ethics of the Concern for the Self as a Practice of Freedom." In *Ethics*.
- _____. 1994d. "What is Enlightenment?" In *Ethics*.
- _____. 1994e. "Subjectivity and Truth." In *Ethics*.
- _____.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78*.

- Trans. by Graham Burchell. New York: Palgrave.
- _____.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79*. Trans. by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 Gerth, H.H. and C. Wright Mills eds.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man, harvey. 1992. *Politics, Death, and the Devil: Self and Power in Max Weber and Thomas Man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mel, Gary. 2000. *Leading the Revolution*.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Harmon, Michael. 1995. *Responsibility as Paradox: A Critique of Rational Discourse on Government*. Thousand Oaks: Sage
- Hennis, Wilhelm. 1988. *Max Weber: Essays in Reconstruction*. London: Allen & Unwin.
- Hoggett, Paul. 2005. "A Service to Public: The Containment of Ethical and Moral Conflicts by Public Bureaucracies," In Paul du Gay ed. *The Values of Bureau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ind, Michael. 2005. "In Defence of Mandarins," *Prospect*. Oct: 34-37.
- Longstaff, Simon. 1994. "What is Ethics Education and Training?," In N. Preston ed. *Ethics for the Public Sector*. Sydney: The Federation Press.
- Löwith, Karl. 1989. "Weber's Position on Science," In *Max Weber's 'Science as a Vocation*, ed. P. Lassman and I. Velody. London: Unwin Hyman.
- Fox, Charles and Miller, Hugh. 2007. *Postmodern Public Administration, 2nd edition*. Thousand Oaks: Sage.
- O'Leary, Timothy. 2002. *Foucault and the Art of Ethics*. London: Continuum.
- Osborne, David and Ted Gaebler. 1992. *Reinventing Government*. Reading: Addison-Wesley.
- Peters, Tom. 1989. *Thriving on Chaos*. Basingstoke: Macmillan.
- Rajchman, John. 1991. *Truth and Eros: Foucault, Lacan and the Search for Ethics*. London: Routledge.
- Rose, Nikolas. 1999. *Power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vers, Camilla. 2008. *Governance in Dark Times: Practical Philosophy for Public Servi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alzer, Michael. 1984. "Liberalism and the Art of Separation". *Political Theory*. 12(3):

315-30.

Weber, Max. 1915. "Religious Rejection of the World and Their Direction," In *From Max Weber*.

_____. 1917. "The Meaning of 'Ethical Neutrality' in Sociology and Economics," In *The Methodology of the Social Science*. 1949. ed. and trans. E. A. Shils and H. A. Finch. New York: Free Press.

_____. 1918. "Parliament and Government in Germany Under a New Political Order," In *Max Weber: Political Writing*.

_____. 1920.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1992. trans. T. Parsons. London: Routledge.

_____. 1921. *Economy and Society. Vol. I, II*. 1978. ed. and trans. G. Roth and C.W. Mil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